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02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최은석 · 강승규 · 김용태

김상훈 • 박준태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

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군인사법」의 개정)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2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임기) ① 장교, 준사관 및	제17조(임기) ①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4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